

동두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02. 3. 11 동두천시장이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2. 3. 11

다. 상정일자 : 제11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본회의 상정, 제안설명, 질의답변

제6차 본회의 상정, 토론 및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1990. 6. 29 조례 제590호로 제정된 조례로서, 이 조례에서 정한 지방직영기업의 범위(적용대상 사업의 기준)가 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정할 필요성이 없고

○ 1999. 3. 31 전문개정된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직영기업의 범위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게 된 사업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업이 선정되기전 6개월 이내에 법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, 현재로서는 불필요한 조례이므로 폐지하려고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“ 동조례 폐지 ”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이 폐지조례안은 1990. 6. 29일 제590호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을 정하였으나, 1999. 1. 29일 법률 제5708호로 지방공기업법제2조를 전문개정하여 적용대상사업을 상·하수도, 도로, 주택 등 공공성이 강한 9개 사업으로 한정하고, 종전의 가스, 청소·위생, 시장 및 관광사업 등을 제외시켰으며, 1999. 3. 31일 대통령령 제16213호로 전문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적용대상

사업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2항에 제1항의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게 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도달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 조례의 폐지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“ 생 략 ”

5. 토 론 요 지

“ 없 음 ”

6. 심 사 결 과

“ 원안가결 ”